

2025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채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결원에 따른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응모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분야		직무내용	인원(명)	비고
단 시 간 근 로 자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교육· 경조사·출산·병가 등의 사유로 업 무의 공백 발생시, 복지서비스제공 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해 대체 인력으로 파견되어 업무지원 - 근무(파견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어린이집,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3	고용 계약 전 인력풀 구성을 위한 모집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사무원				
	영양사				
운전원					

2. 채용기준

가. 공통자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조리직 및 시설 추천 돌봄직은 65세 이하까지 가능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활동이 가능한 자
- 상기 조항에 위배 되는 자는 합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나. 고용형태

- 단시간 근로자 인력풀
- 인력풀에 등록된 뒤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인력풀에 등록된 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형태

다. 자격요건(세부사항)

- 공고일 현재 모집 분야별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

구분		자격기준
돌봄직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활동경력자 우대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훈련교사 활동경력자 우대
간호직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활동경력자 우대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활동경력자 우대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증빙자료 제출시)

사무원	• OA, 회계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활동경력자 우대
운전원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3. 결격사유

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규칙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규칙」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사업안내 준용) 결과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 중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나. 대체인력지원사업 자격제한사항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p11 (자격 제한사항)

1)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채용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하고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부적격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기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미법을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별 결격사유 별도규정**

구분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4. 시험방법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비고
서류심사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적격 판정자 전원	적부판단
면접시험	○ 경험면접(100%)	1배수 이내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적/부판단 : 필수자격요건 및 서식작성 충족여부
- 심사위원은 모집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위원 2명으로 선정하여 진행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시험방식]: 대면면접 진행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등록장애인

3순위: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

4순위: (해당시)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순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을 준용하여 동점자 합격 순위 결정

- 면접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하여 서류전형 적합자에 한하여 진행
- 채점표(표-1)에 의거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인력풀을 구성, 단 면접점수 60미만인 경우 제외

연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고
1	전문성	20	평가기준 0~5 : 미흡 6~10 : 보통 11~15: 우수 16~20: 탁월
2	직무적합도	20	
3	품성/태도	20	
4	조직적합도	20	
5	의사소통능력 및 표현력	20	
합 계		100점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3. ~ 사업종료시
- 접 수 처: 우편 및 이메일 접수(cycle23@incheon.pass.or.kr)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3층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앞

※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6996)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나. 채용일정

전형 단계	전형 일정	비고
서류심사	• 수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일 후	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일 후	재단 홈페이지 공고
(필수) 합격자 직무교육 ※ 범죄경력조회 진행,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면접합격자 발표 후	*인천시 생활임금 반영 인건비 지급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직무교육 이수자는 2025년 인천시 생활임금에 따라 이수 시간만큼 인건비 지급

다. 1차 채용면접일정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25. 4. 1.(화)

○ 면접시험 : 2025. 4. 3.(목)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5. 4. 7.(월)

○ 직무교육 및 서류제출 : 합격자 발표 이후

※ 추후 채용면접일정은 모집인원 및 지원자에 따라 결정되며 따로 공지하지 않음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6. 제출서류

구분	주요내용	
서류전형 시 (이메일 제출)	필수	- 지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서식 1,2,3호) - 자격증빙서류
	해당시	- 우대사항 관련서류
합격자 대상 (합격자 직무교육시 제출)	필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조회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13자리 표시) - 급여통장 사본

※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면접 시 경력인정 기준일은 면접예정일이며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해야 함
- ※ 경력증명서 外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 채용 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을 준용하며,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7. 근무 및 보수수준

○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자로 선발

- 계약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종료일’로 정해지므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 소멸

○ 근무시간 : 개별상이

- 근로시간 신청 시간에 따라 상이
- 근무시간표는 별도로 작성되며,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 발생 가능
- 기준 근로시간: 09:00~18:00(최대 8시간 근로 가능,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 휴게시간: 4시간 기준 30분 부여, 8시간 기준 1시간 부여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파견시설 업무 사정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파견 시설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보수: 계약기간에 따라 개인별 정산

구분	세부내용	금액
기본급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1,630원(시급)*
교통비	1일	5,000원
*2025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 주휴수당** 별도 지급(인별 상이)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 4대보험: 기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 - 파견신청에 의해 근로계약 진행, 개별 상이		

라. 근무지: 대체인력파견 신청에 따라 근무지 상이

8. 지원자 주의사항

- 모집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

력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인력풀 구성을 위한 지원자 모집이며, 대체인력파견 신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합격자는 대체인력지원 신청에 따라(' 25. 3. 이후 예정)부터 업무 투입이 가능해야 함
- 응시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5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서식 제4호)하며,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해 발송합니다.(방문 수령도 가능)

대 체 인 력 지 원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이 메 일			
연 락 처			
경 력 사 항	근무년월일	내용	소재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자격증	발급기관명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02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경 력 사 항	
성 격 장 점 및 단 점	

*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02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	--	------	--	-----	--

1. 본인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 대체인력과정을 신청하는 지원자로서 인적자원관리상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가. 성명, 가족사항 나. 주소, 이메일, 연락처 다.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라. 기타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가. 채용 전형 나. 근로관계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 이행 다. 인사이동, 상벌, 주요 근로조건 결정, 기타 인적자원관리	보유기간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를 생애주기로 하고,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으로 함. 개별법령에서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책정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아래의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가. 신체장애 나. 국가보훈대상 다. 병력 라. 범죄경력 마. 기타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민감정보	가. 우선채용대상자격 및 정부지원금(장려금 등) 나. 인사이동, 업무적합성 판단, 기타 인적자원관리	보유기간은 특별히 영구 또는 장기간 보유해야 할 사정이 없는한 상기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으로 함.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가.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나. 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가 필요한 업무자에 한함)	가. 개인정보 식별 나. 업무자격확인(운전면허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보유기간은 특별히 영구 또는 장기간 보유해야 할 사정이 없는한 상기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으로 함.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위 1~3항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부정확에 따른 채용, 인사이동, 업무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으며,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으며,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유출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①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